

‘竹島’일본영토론자들의 사고논리의 특징에 관한 분석*

-시모조 마사오를 한 유형으로-

최 장 근**

(e-mail: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비논리적인 왜곡된 역사인식
 3. ‘죽도문제’¹⁾에 대한 왜곡된 관념
 4. 일본 국내의 한국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
 5. 한중일 3국의 문화론에 대한 오류
 5.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종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 677호로 독도에 대한 관할권과 통치권을 한국에 인정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²⁾ 대일평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A02068830).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정치학전공

- 1)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한국영토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섬이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죽도’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문제 제가를 하므로 ‘죽도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죽도문제’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굳이 사용하려면 ‘죽도문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이다. 그것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 자유진영의 연합국은 독도의 지위를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1946년의 SCAPIN 677호를 묵인한 것이다. 그 결과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지도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병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광복 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개소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5년5월8일, pp.95-114.

화조약에서도 연합국은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³⁾ 한국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도록 했다.⁴⁾ 1974년 대륙붕협정에서도 한국의 실효적 점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⁵⁾ 그 이후 일본은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 그다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새로운 한일어업협정⁶⁾을 강요하여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포함하는 잠정합의수역(일본식 속칭 ‘공동관리수역’)의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 7년간도 일본은 독도에 대해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시마네현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53년이 지난 후 2005년 갑자기 ‘죽도의 날’을 지자체 조례로서 제정했다. 왜 그랬을까?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라는 한 우익인사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⁷⁾ 시모조는 당시 한국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역사성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 실제로는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좌표를 잠정합의수역 즉 ‘공동 관리수역’ 속에 포함하는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결정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독도와 그 영해도 당연히 어업협정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를 왜곡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독도마저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조작했던 것이다. 시모조는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진 ‘죽도’영토론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동원하여 시마네현과 현의회, 현출신의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죽도 영유권 강화를 선동하여 급기야 침묵의 일본정부(외무성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⁹⁾ 또한 내각관방¹⁰⁾도 ‘영토대책기획조정실’

3) 최장근,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처리」,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pp.33-112.

4) 최장근, 「한일협정 시기의 일본국회의 공방」,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2014, pp.131-210.

5) 최장근, 「한일협정 직후시기의 일본국회의 공방」,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pp.269-304.

6)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어업협정도 체결하였다. 1965이 이후 한일 간에는 어업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위기를 악용하여 1997년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

7) 최장근,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일본영토론 조작방식」, 『일본근대학연구』 제44집, 2014년 5월, pp. 293-412

8)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검색일: 2015년 5월 31일)

9) 일본정부가 ‘죽도의 날’행사에 정부기관을 과건하여 동조함으로써, 자민당과 시마네현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제9회와 제10회 행사에는 국회의원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10) 「領土・主權對策企劃調整室(내각관방)」, <http://www.cas.go.jp/jp/ryodo/ryodo/takeshima.html>(검색일: 2015년 5월 31일)

을 설치하여 ‘죽도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죽도문제’를 선동한 장본인인 시모조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인식과 그의 사고방식은 어떠할까? 본 연구에서는 시모조의 역사관과 일본론, 한일관계관, 국제관계관에 관해서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라는 이름으로 2015년 1월 24일 마쓰에(松江)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제 44회 죽도문제(竹島問題)를 생각한다”¹¹⁾ 강좌에서 「죽도문제와 한국의 ‘역사인식문제12)」라는 강연¹³⁾내용을 분석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국적의 연구자도 있지만,¹⁴⁾ 대부분 일본국적의 역사학자들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라는 연구 성과를 내었다.¹⁵⁾

2. 비논리적인 왜곡된 역사인식

시모조는 ‘죽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竹島問題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李承晩라인’과 日韓國交正常化交渉, ‘日韓 課題’, ‘日韓基本條約’ 締結과 竹島問題, 독도는‘朝鮮侵略의 最初 犠牲地’라는 키워드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표출했다.

-
- 11)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takeshima07/H26kouza.html>.
 - 12) 상동.
 - 13)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第44回竹島問題’を考える”에서 강의하는 시모조의 모습,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takeshima07/H26kouza.data/IMG_5112.JPG(검색일: 2015년 5월31일)
 - 14) 일본영토론을 내는 학자들은 일본 국적의 국제법학자들이 다소 있고, 그 이외는 학자라는 타이틀로 어용학자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이 일본영토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국내에 어용학자들이 조작한 ‘타케시마영토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일본영토론으로서, 奥原碧雲이 저술한 『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1906. 「竹島沿革考」, 『歴史地理』第8卷 第6号, 1907 등이 있고, 川上健三가 저술한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 1966, pp. 1-291. 『竹島の領有』日本外務省條約局, 1953 등이 있고, 田村清三郎가 저술한 『島根縣竹島の研究』, 1954, pp. 1-83. 『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總務部總務課, 1965, pp. 1-159 등이 있다.
 - 15) 야마베 켄타로(山辺健太郎),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호리 카즈오(堀和生),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등의 연구성과가 두드러진다. 이들의 연구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일본영토론은 없다. 内藤正中 연구로서 金柄烈과의 공저, 『歷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2007. 朴炳涉과의 공저, 『竹島=獨島論爭—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2007 등이 있다.

(1) ‘李承晩라인’¹⁶⁾과 ‘日韓國交正常化 교섭’에 관해서

‘李承晩라인’과 日韓國交正常化 교섭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시모조는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李承晩라인’을 선포하고 나서 일본어민을 나포 억류하여 한국이 인질외교를 벌였다고 한다. 한일 간에 1952년 2월에 ‘日韓國交正常化’ 교섭의 본 회담이 시작되었다. 산케이(産経)신문 카토(加藤) 지국장이 在宅 기소된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인질외교’라고 한다.¹⁷⁾ 시모조는 ‘李承晩라인’, 또는 ‘日韓 國交正常化’ 교섭이라는 아카데미한 주제를 가지고 두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없다. 시모조의 의도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어 출국이 금지된 것인데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인질외교’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라인’을 동원한 것이었다. ‘李承晩라인’은 한국대통령이 연합국이 결정한 독도를 비롯한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한 평화선으로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승만라인’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카토 지국장이 출국금지된 것과는 그것은 학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시모조 논리의 논리적 모순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평화선 선언 후 이를 침범한 일본어선에 대해 나포하여 억류한 것은 일본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였기에 국권 수호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이다. 이를 ‘나포외교’라고 하는 주장은 ‘타쿠쇼규대학 교수’라는 학자의 신분으로서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둘째로, 산케이신문 加藤 지국장이 在宅 기소된 것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에 보도하였다고 하여 명예 훼손으로 기소된 것이다. 카토 지국장이 한 인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재판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인질외교’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처럼 시모조는 타쿠쇼규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자라는 명목으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이 되었는데, 이 연구회가 독도의 역사를 학술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한다고 주장하는 것¹⁸⁾과는 사뭇 모순된다. 따라서 시모조는 외형적으

16) 일본은 이승만대통령이 선언한 「대한민국 주권선언」 즉 ‘평화선’에 대해 「이승만라인」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불법적으로 선언한 ‘라인’이라는 것이다. ‘평화선’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이 내셔널리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상동, 下條正男氏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18) 島根県, 「竹島問題研究会」,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竹島問題研究会(2007.3), 『最終報告書: 竹島に関する調査研究』竹島問題研究会 참조.

로는 학자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셔널리스트로서의 혐한(嫌韓)운동가이다.

(2) ‘일한과제’에 관해서

‘일한과제’라는 주제를 언급하여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난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주로 밀항입국자), 재산청구권, 어업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주로 밀항입국자들로 이루어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정주권을 주는 것은 일본이 희생적으로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인이 종전과 더불어 귀국하면서 한국에 있던 재산에 대한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재산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업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이 ‘이승만라인’을 불법적으로 선언하여 어업권을 강제로 점유했다는 주장이다.¹⁹⁾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시모조의 모순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존재는 불법적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영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를 가지고 일본이 선의적으로 엄청나게 배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강제점령기에 일본제국 국민이 한국에 거주할 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종전과 더불어 귀국할 때 재산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이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현상만을 갖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셋째로, 어업문제에 관해서는 평화선을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평화선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인정한 SCAPIN 677호와 맥아더라인에 의거한 것으로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맥아더라인이 파기됨으로써 독도를 비롯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도발당할 것을 예견하고 취한 합법적인 조치이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도 일본이 이 ‘평화선’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확립된 것이다. 한일협정에서는 박정희정부가 오히려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으로 확보한 어업권에 대해 이를 철폐하려는 일본의 집요함 때문에 평화선에서 후퇴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⁰⁾

19) 상동,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20) 최장근,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과의 관련성」,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독도연구보전협회, 2003, pp. 315-358. 김명기, 「1998년 한일협정과 독도」,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선인, 2014, pp. 85-268.

(3) ‘일한기본조약’ 체결과 ‘竹島’문제에 관해서

‘일한기본조약’ 체결과 ‘竹島問題’라는 주제로 시모조는 일본이 1905년 합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 ‘竹島’를 편입 조치한 것인데, 한국이 1952년 ‘이승만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는 것이다. 사실 1905년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로서 정당한 영토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종전한 이후 일본이 연합국과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의 영토는 모두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다는 연합국의 전후 영토조치에 의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이 ‘竹島’를 편입했다고 하여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1877년 메이지 정부도 ‘태정관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는 일본이 침략한 영토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에 의거해 한국영토가 되는 것이 맞다. 이를 바탕으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과의 합의 하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관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을 ‘불법 점유’라고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달한다.²¹⁾ 이러한 내용에 입각하여 시모조 논리의 모순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모조는 1905년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가 정당한 영토조치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연합국의 SCAPIN 677호 명령 등 모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때 가능한 주장이다. 죽도 편입조치인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무주지를 일본이 선점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1905년 이전에 한국영토로서의 근거자료를 차치하더라도 일본이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막부의 조치, 메이지정부의 조치까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영토를 결정할 기준으로 연합국이 결정하여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즉 이들 선언에 의해 189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05년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영토론자들의 논리는 옳지 않다.

둘째로 1954년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한다. 1954년은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하기 시작한 해이다. 해방이후 SCAPIN 677호에 의한 연합국의 조치로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여 관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전쟁기를 악용하여 독도에 불법적으로 상륙하여 점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울릉도의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수비대를 결성하여 스스로

21) 상동,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상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대전을 전후에서 독도가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적 근거는 1905년 편입조치를 들고 있다. 편입조치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불법적인 조치임이 명확히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1월 연합국은 SCAPIN 677호를 명령하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1954년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무력으로 점유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4) 독도의 ‘조선침략의 최초 희생지’에 관해서

시모조는 독도가 1905년 일본이 합법적으로 편입한 정당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卞榮泰 외무부장관이 1954년 10월 28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조선침략의 최초 희생지’라고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²²⁾ 마치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잘못 때문에 한국이 독도를 ‘조선침략의 최초 희생지’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듯하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정한(征韓)론’을 주장했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1870년에 조선국정을 밀탐한 후, 1875년 강화도를 침입하여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빌미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강제하여 일본인들의 조선 국내 거주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 후 일본은 조선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청국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에 대해 조선을 ‘자주국’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선침략에 방해가 되는 러시아를 배척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있어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한 이후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일본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 조치했다.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편입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제국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1910년 불법적인 한일병탄조약에 의해 한국이 일본에 전적으로 침략당하지만, 말하자면 이미 그 이전에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가 처음으로 일본의 침략에 노출되었던 것이 독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이 무주지를 선점하여 국제법적으로 竹島가 합법적으로 편입한 일본의 새로운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침략적인 행위이다.

여기서 시모조 논리의 모순은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마치 사실과 다르게 ‘조선침략의 최초 희생지’라고 사용했던 것을 오늘날 한국정부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모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은 없고 어떤 현상만 갖고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유권을 조작한다. 이것이 시모조식의 논리이다.

22) 상동,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5) 칙령41호의 ‘石島=독도’에 관해서

시모조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이,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영토가 되었고, 특히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41호’로 동해바다에 있는 모든 섬을 관리하기 위해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도군의 관할 범위로서 「鬱陵全島, 竹島²³⁾, 石島」로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石島’는 오늘날의 독도이다. 그런데 일본이 ‘日露戰爭’을 일으켜서 전쟁이 한창일 때에 1905년 2월 22일 ‘竹島’라는 이름으로 ‘日本領’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은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인식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하는 주장이다.²⁴⁾

한국의 이러한 주장은 고문헌에 의해 논증된 것이다.²⁵⁾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맞다. 동해 바다에 울릉도와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섬으로 관음도와 죽도가 있다. 그 외에 나무가 없고 순전히 작은 돌덩어리로 된 바위가 4개 있다. 칙령41호에 울도군의 관할 범위로서 나열된 섬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이다. ‘석도’가 독도임을 가장 간단하게 논증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울릉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도와 석도를 제외한 울릉도 주변의 복수의 섬 즉 바위를 포함하는 모든 섬을 말한다. ‘석도’는 따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울릉전도’에서 제외된다. ‘죽도’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따라서 ‘석도’도 아니고, ‘죽도’도 아니므로 ‘석도’와 ‘죽도’ 내측에 있는 모든 섬이 ‘울릉전도’가 된다. 따라서 ‘석도’는 울릉도에서 87.4km나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독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무시하고, 아무런 논증 없이 추측성으로 오늘날의 ‘관음도’가 석도라고 주장하는 것²⁶⁾이 시모조식의 논리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나, 설득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시모조의 논리는 미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영토로서의 논거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시모조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23) 이 섬은 오늘날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가리키는 ‘죽도’가 아니고, 울릉도 본섬에서 2km 지점에 있는 뗏섬을 말한다.

24) 상동, 下条正男氏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25) 일본 메이지정부가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태정관지령」은 명확히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송병기, 「地方官制 編入과 石島」,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pp.112-132. 송병기, 「광무(光武)4년(1900) 칙령(勅令) 제41호」, 『독도영유권 자료선』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pp.237-241. 신용하,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과 태정관의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pp.164-171.

26) 下条正男(2005) 『竹島一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 pp. 132-171.

(6)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에 관해서

시모조는 한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사례로서 위안부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저질러온 慰安婦문제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주변국가를 침략했다고 하는 모든 기술을 삭제해야하고, 또한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라는 명칭은 절대로 통용되도록 해서 안 된다. ‘일본해’라는 명칭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도록 일본이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국제법’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²⁷⁾ 이처럼 시모조의 모순은 선행연구에서 기정사실화된 내용²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고, 한국이 선량한 일본에 대해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아주 합당하다는 태도이다.

시모조는 국제법적으로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이 일본영토로서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죽도’를 편입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연합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취한 모든 영토는 일본영토에서 분리되는 것이 국제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모조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느 나라의 것인지 기탁하여 해결하자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종전 후 연합국의 조치인 SCAPIN 677호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됨으로써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관할 통치하고 있다. 또한 연합국의 이러한 결정은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가 명백하게 한국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모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없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문제로서 ‘독도문제’는 없고 ‘죽도문제’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죽도문제’는 한국이 기탁의 상대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²⁹⁾

27) 상동,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28)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침략한 영토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여 연합국이 요구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로 확인됨.

29) 제성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광복 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개소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5년 5월 8일, pp.151-178.

3. ‘죽도문제’에 대한 왜곡된 관념

시모조는 “竹島問題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모조의 인식은 보편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竹島의 날’ 지자체 조례 제정의 당위성 주장의 모순성

시모조는 유엔해양법조약에 의거하여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직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의 울릉도와 ‘죽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2005년 ‘한일우정의 해’라고 하여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시마네현의회가 ‘竹島의 날’ (2월22일)의 조례를 정했다는 것이다.³⁰⁾

독도가 일본영토라면 당연히 독도기점으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편입조치는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침략한 영토에 해당된다는 사실,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 지위, 평화선에 의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선언, 한일협정에서의 독도 지위, 대륙붕협정에서의 독도 지위 등과 같은 전후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조치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일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면 미국, 영국 등 대일평화조약 체결에 가담한 자유주의국가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나라로 고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최소한 조약체결의 핵심국가였던 미국과 영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³¹⁾

이처럼 현 아베정권과는 달리, 전후 일본정부는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적인 사고정도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영유권 도발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정한 것은 우방국간의 우의를 저버린 아주 무모한 침략적인 행위이다. 한국의 모 지자체가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³²⁾ 아베정권에 들어와

30) 상동,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 (第4回, 1月24日) 참조,

31) 「일본영역도」,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1952, 참조.

서 이런 시마네현이 무모하고 침략적이며 불법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방국인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는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역사문제로서 한국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언급한 점으로도 확인된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여 적극적으로 영토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모조의 이러한 인식은 독도는 물론이고 일본역사, 동아시아역사, 세계역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2) 신‘일한어업협정’에 대한 인식 결여

시모조는 1998년 한일 양국 간에 신‘일한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독도문제에 관해 유보하였기 때문에 ‘일본해’가 ‘난획의 바다’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⁴⁾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정부가 1965년에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에 유리한 신 어업협정을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구 한일 어업협정 보다는 신 어업협정이 어업적 측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그 결과 신 어업협정에 의해 동해의 어업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시모조는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일본해’가 ‘난획의 바다’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모조의 논리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사실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여 주변의 12해리 영해를 배타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시모조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12해리 영해, 그리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여 통치하고 있는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이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말한다. 시모조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독도가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연합국이 한국의 실효적 관할 통치를 인정하였기에 명백한 한국영토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 양보할 일은 없다. 그런데 시모조는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은 다루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영토문제를 유보하고 어업협정만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2) 시마네현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같은 차원에서 대응하여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지정했다.

33) 「미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땅”」,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09863C>(검색일: 2015년 6월4일)

34) 상동,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신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기존의 어업질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강요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룰을 어긴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도발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3) 동아시아정세와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 결여

시모조는 자신이 주도가 되어 2005년 ‘죽도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테모’를 격렬하게 하는데 러시아가 반일테모에 동조하여 北方領土問題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³⁵⁾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제도-일본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다오위다오는 원래 명나라의 해역에 속하던 지역을 청나라가 계승한 지역인데,³⁶⁾ 일본이 청나라를 침략하여 1895년 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편입조치를 취하여 일본의 신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그래서 다오위다오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로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이므로 중국은 충분히 일본의 다오위다오 점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쿠릴열도 남방 4도(北方領土-일본명칭)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쿠릴열도는 전근대시대에는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와 더불어 아이누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사실상 일본과 러시아는 타민족의 영토를 서로 분할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쿠릴열도 남방4도는 1854년 러일 화친조약으로 평화적으로 일본영토에 귀속되었다, 그런데 1875년 사할린과 쿠릴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은 러시아령, 쿠릴열도의 전부는 일본령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사할린 남부를 할양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비추어볼 때, 화친조약으로 북방4도를 일본영토로서 평화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일본이 다시 러일전쟁을 일으켜 평화적인 양국 간의 경계를 파괴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불안정했던 러일 국경선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연합국측에 가담함으로써 다시 러시아가 연합국과 합의한 알타협정에 의거하여 쿠릴열도 남방4도를 포함한 모든 쿠릴열도를 점유하여 통치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

35) 상동,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36) 井上清, 「釣魚諸島は明の時代から中國領として知られている」, <<尖閣列島—釣魚諸島の史的解明>>現代評論社, 1974, pp.24-33.

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고유 영토로서 합법적인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명 ‘북방4도’라고 하는 섬에 관해서도 러일 화친조약에서 평화적으로 일본영토가 된 것을 러시아가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중국에서의 반일데모가 러시아에 영향을 주어 러시아가 이를 이용하여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모조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논증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시모조는 역사적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추측성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멋대로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4)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대한 인식 결여

시모조는 한국이 2005년 4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을 발족했고, 이를 2006년 9월 변경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18억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독도수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당시 시마네현(島根縣)은 ‘죽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1천만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예산으로 영토수호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전적으로 손을 놓고 있고 고작 시마네현의 1천만엔의 예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령당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주장이다.³⁷⁾

사실 당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고대 국가였던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의 국가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했던 것이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독도도발에도 더불어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이 만들어져 그것이 법제화되어 ‘동북아역사재단’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모조가 선동하여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지 않고,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면 ‘동북아역사재단’도 탄생하지 않았고, 당연히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도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모조는 순전히 한국정부가 독도수호정책만을 위해 ‘18억엔’의 예산을 사용하여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시모조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동적인 행동을 스스로없이 하고 있다. 이

37) 동상,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참조, 찾아가는 길; 인터넷장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takeshima07/H26kouza.html>)에서 [トップ] 県政・統計 県情報 竹島関係 Web竹島問題研究所 パンフレット・研修 研修 H26年度考える講座開催状況].

는 결국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일관계를 냉각시켰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역행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시모조는 한일관계의 역사에 길이길이 악인으로 새겨질 것임에 분명하다.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시모조의 선동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죽도문제’는 모두 시모조의 잘못된 선동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모조의 의도는 일본정부를 자극하여 ‘죽도문제’를 외교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한국의 독도수호정책의 예산을 부풀린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시모조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선동적인가를 알 수 있다.

(5) 조작된 ‘竹島問題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의 제작 경위

시모조의 선동으로 시마네현은 2005년 6월 ‘竹島問題研究會’를 발족했고, 연구회는 2년간의 활동 성과로서 2007년 3월 ‘第1期 最終報告書’를 시마네현에 제출했다. 2008년 2월에는 ‘外務省’의 의뢰를 받고 ‘竹島問題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를 제작했다.³⁸⁾

시모조가 좌장으로 이끄는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영토론을 조작하는 단체이다. 조작 방법으로는 한국영토로서의 근거를 해석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한국영토론을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영토를 입증하는 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해석을 조작하여 일본영토론을 조작했다. 따라서 일본의외무성의 이름으로 제작된 ‘竹島問題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는 전적으로 객관성과 논리성이 없는 조작된 일본영토론이다.

이처럼 만일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나서서 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이다. 과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영토적 권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선동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일본 민족주의에 의한 잘못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위로 만들어진 ‘竹島問題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는 사실상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은 없다. 오히려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38) 동상,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참조.

독도영유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과장되고 문제가 많은가에 관해 철저한 분석과 지적할 필요가 있다.

(6) 일본정부의 ‘竹島’ 근해의 測量船 파견 진의에 대한 오해

시모조는 2006년 4월 일본정부가 ‘죽도 해저’를 조사하기 위해 측량선을 파견했다가 한국측의 요청으로 철수했다고 주장한다. 즉 독도의 해저를 측량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성과를 내었어야 하는데 일본정부가 도중에 나약한 독도의교를 펼쳤다는 주장이다.³⁹⁾

시모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이 2006년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해저의 해산명칭을 한국식으로 등재하려는 계획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측량선을 독도근해에 파견하여 시위를 벌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일촉즉발의 공선 간의 충돌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측이 해산 등재를 보류함으로써 일본의 측량선이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독도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상황은 과거 일본정부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도발적인 행위이다. 시모조는 독도에 있어서 전례없는 도발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나약한 독도외교를 했다는 입장이다. 시모조는 무력으로 사용해서라도 한국의 실효적 점유 상태를 변경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모조의 인식은 잘못되었다. 일본의 역대정부들이 한국을 상대로 한 독도정책을 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강력한 영토적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⁰⁾ 이처럼 시모조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추측성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자민당의원의 ‘울릉도 방문’(2011년 8월)⁴¹⁾에 대한 인식 결여

시모조는 “2005년 3월 15일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제정 시 정부(당시 자민당)에서 제정을 중단하도록 방해가 있었다.”⁴²⁾ 또한 “2011년 8월 하루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중의원 의원,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독도 기념관이 있는 한국의 울릉도를

39) 동상,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참조.

40) 1965년 한일협정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했고, 1974년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

41) 「下条正男教授のインタビューから」,
<http://anago.2ch.net/test/read.cgi/wildplus/1346798367/4>(검색일: 2015년 6월 4일)

42) 상동, 「下条正男教授のインタビューから」 참조.

시찰하려고 방한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으로 히라사와 카즈야(平澤勝也)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참의 진짜 이유는 한국 전국회의장으로부터 야마사키 타쿠(山崎卓)에게 울릉도방문을 하지말도록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히라사와는 겁쟁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도 중개하여 말렸다. 한국 측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한일의원연맹의 전 회장)와 와타나베 고조(渡辺恒三)에게 울릉도방문을 저지하라고 요청했다. 모리 요시로가 자민당에 요청하여 원래 자민당 이름으로 시찰하려고 했던 것이 개인적인 여행으로 바뀐 것이 되어버렸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쿠 쇼쿠 대학의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그 해 7월 31일 선발대로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는 것으로 볼 때 사실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처사였다. ‘죽도문제’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실효적 관할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방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일본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마네현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모조는 이러한 독도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일본 측량선의 독도근해로 이동하다가 귀항한 것에 대해서도 “모리 요시로는 2006년 4월 한국이 유엔수리기구에 ‘죽도’의 해저지명을 등재하려고 할 때 사카이 항 인근에 머물고 있던 해상 보안청의 선박을 철거시켰다.”고 주장한다. 마치 모리총리가 매국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⁴³⁾ 원래 측량선 파견의 목적이 실제로 독도근해를 측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한국이 독도 근해 해저지명을 등재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양국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해저지명등재를 보류하여 철수한 것으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시모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시모조는 자료를 취사선택함으로써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특징이다.

4. 일본 국내의 한국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

시모조는 일본정부에 대해 외무성이 ‘죽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43) 일본의 우익들은 이러한 행동을 한 모리총리를 매국노로 몰아세우고 있다(상동, 「下条正男教授のインタビューから」 참조).

독도정책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인들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성을 촉구했다. 즉 한국은 ‘죽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①2013년 2월 21일, ‘독도를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독도련)」 배삼준 회장이 시마네현 지사를 상대로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태정관 지령”(1877년)등을 언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전제로 행한 시마네 현 조례는 무효라는 내용으로, 마쓰에(松江)지방법판소에 행정소송⁴⁵⁾을 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되었다라고 하여 한국의 시민단체가 모순적으로 무모하게 일본의 법원에 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②2013년 5월 23일 ‘竹島の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회장 尹滌夏)⁴⁶⁾은 일본사회에 살고 있는 제일 한인 단체로서 ‘竹島’에 상륙했다고 하여 제일 시민단체가 일본영토인 ‘죽도’에 도발적으로 상륙했다고 비난했다. ③2013년 6월 시마네현의회가 시마네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⁴⁷⁾를 제출했다고 하여 일본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④2014년 4월 14일에 한국의 시민 단체 ‘독도를 일본에 알리는 운동연대’ 배삼준 회장은 지방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회원 10명과 함께 2월 21일에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 마쓰에(松江)지부에 2월 22일을 “죽도의 날”에 정한 일본 시마네 현의 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 控訴을 했다.⁴⁸⁾ 3월 31일, 지방 법원은 조례 제정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되지 않다고 독도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시모조는 항고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시민단체의 도발이 집요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⑤독도사랑모임’ 등이 2014년 8월 아사히(朝日)신문이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오류를 인정하여 정정”하자, ‘산케이신문 가토(加藤) 지국장을 고소했다’고 하여 시모조는 가토 지국장 고소사건이 마치 위안부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일본에 항의한 대응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위안부문제와 카토 지국장의 고소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를 관련시켜 카토 지국장 고소문제를 한일 간의 감정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44) 상동, 下条正男氏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45) 「독도재판(죽도의 날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tw21&logNo=30185761114>(검색일: 2015년 5월20일)

46) 윤영하, 제일본 시민활동 운동가.

47) 「島根県議会で可決された慰安婦決議」, <http://sunonthetree.blog.me/110177367777>(검색일: 2015년 5월 20일).

48) 「韓國団体が“죽도의 날” 정한 현 조례 취소 소송」,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4/14/2014041402887.html?ent_rank_news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이처럼 시모조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시모조는 독도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본정부를 자극시켜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을 부추겼다. 그러나 시모조는 해방이후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외교정책화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할만한 영토적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⁴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5. 한중일 3국의 문화론에 대한 오류

일본과 한국, 중국, 북한(북조선-일본명)은 같은 동아시아의 유교국가이지만, 일본은 ‘封建制’, 한국 중국 북한은 모두 ‘郡縣制’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상이 ‘일본과 중국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⁵⁰⁾라고 주장한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소극성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적 체질인 봉건제’국가였기 때문에 오야붕과 고봉 또는 세습적인 문화 때문에 적극적인 독도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중국 북한은 중앙집권적 체질인 ‘군현제’를 취함으로써 ‘책봉체제’를 갖은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한국 북한은 서로 연대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3국간의 연대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⁵¹⁾

오늘날 독도문제는 그런 사회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전 후 연합국이 SCAPIN 677호로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의 관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일본의 억지 논리에 의해 생긴 문제이다. 현재 봉건제라는 역사성 때문에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모조식의 황당한 논리이다.

시모조의 논리조작방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를 본인의 취향대로 취사선택하여 갖고 와서 본인이 의도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모조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에 대해 일본정부가 충분하고도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영토로서의 근거자료

49)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사업사, pp.2-322.

50) 상동,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51) 상동, 下條正男, 「竹島問題と韓國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일본명)가 중국영토가 될 수 없다는 증거자료로서 “① 「欽定古今圖書集成」에는 台灣府와 尖閣諸島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日台漁業협정」(東京新聞에 의함)⁵²⁾, 그리고 독도가 한국영토가 될 수 없는 증거자료로서, 「日韓漁業協定水域圖」⁵³⁾를 들고 있다.

첫째로, “「欽定古今圖書集成」에는 台灣府와 尖閣諸島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제도가 일본영토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의 대만지도 부분에 센카쿠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대만영토가 아니고 일본영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많은 지도에 중국이나 대만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도만 골라서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모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둘째로, 「日台漁業협정」(東京新聞에 의함)에 관해서도 이 협정은 영토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를 제외한 어업문제를 다룬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순전히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제도의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어업질서를 위해 정치적으로 타협한 산물이다. 영토주권과 무관한 협정이다.

③ 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日韓漁業協定水域圖’에 관해서도 일본이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어업협정 체결을 강요하여 영토문제를 제외하고 순전히 어업문제만을 다룬 것이다. 시모조는 이처럼 영토문제를 전혀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갖고 와서 이것이 마치 엄청 신빙성을 갖는 자료인 것처럼 우기는 것이 시모조 논리의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모조의 논리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단지 극우주의자들이 오로지 국가를 위해 충성하듯, 전형적인 내셔널리스트의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죽도문제’에 대한 시모조의 논리를 검토해본 결과, 일본영토론자들의 논리는 시모조와 같이 일본영토로서 합당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조작하기 때문에 시모조의 논리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⁵⁴⁾

52) 일본식의 명칭은 「日台漁業取決め」임.

53) 상동, 下条正男,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참조.

54) 각주 (16) 참조.

6. 맺으면서

이상으로 전후에 발생한 ‘죽도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일본이 묵인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조용했는데, 시모조 마사오가 신 한일어업협정을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시켜 ‘죽도문제연구회’를 설립하도록 선동하고 ‘죽도의 날’을 선동함으로써 ‘죽도문제’로 한일관계를 극한상황으로 냉각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한 시모조의 ‘죽도문제’의 인식과 현재 상황인식에 관해서 고찰해보았다. 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모조의 학문적 경력을 보면 시모조의 연구가 학문으로 논리적인 논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없다. 현재 소속된 다쿠쇼쿠대학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시기에 초빙되었기에 우수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교수직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⁵⁵⁾로 판단되어 입사한 것이다.

둘째, 죽도문제연구회 설립을 발의한 사람이 시모조이다. 시모조는 시마네현지사를 움직이고, 현의원을 움직여서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정하도록 선동했고, 또한 시마네현 국회의원을 선동하여 자민당 국회의원을 통해 일본국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자민당의원을 통해 일본외무성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미 시모조의 노력으로 일본외무성, 아베총리를 움직이게 하여 상당히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셋째, 일본외무성의 정책으로 채택된 ‘10포인트’는 앞선 오쿠무라 헤키운, 가와카미 겐조, 다무라 세이자부로 등에 의해 조작된 일본영토론자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모조가 주도하는 ‘죽도문제연구회’가 논리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시모조의 노력이 일본정부를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시모조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영토론을 부정하고, 사료를 왜곡 해석하고 영토문제로 다투고 있는 주변국가 즉 한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논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학술적이지도 않다.

다섯째, 시모조는 오늘날 ‘죽도문제’, 센카쿠제도문제, 쿠릴열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일본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이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은 시모조 본인을 비롯한 ‘죽도문제연구회’의 노력이라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

여섯 번째, 시모조 논리의 특징은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을 갖고 와서 사례로 든다거나,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갖고 와서 마치 결론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증된 듯이 본인

55) 이 대학에는 모국인 한국을 부정하고 일본 극우와 손을 잡고 한국을 비방하는 신친일파 오선화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의 주장이 옳다고 우긴다.

이상처럼, 시모조의 논리는 한일관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해결 방법을 파국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여 일본의 미래는 물론이고 한일관계,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영토론자들의 논리는 일본영토로서 합당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조작하므로 시모조의 논리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김명기(2014)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출판사 선인, pp. 85-268,
- 송병기(2005)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pp.112-132.
- 송병기(2004) 『독도영유권 자료선』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37-241.
- 신용하(1996) 「일본 메이지정부 내무성과 태정관의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pp.164-171
- 정병준(201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광복 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개소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5년 5월 8일, pp.95-114.
- 제성호(2015)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광복 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개소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5년 5월 8일, pp.151-178.
-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p.33-112.
- 최장근(2014)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131-210.
- 최장근(2014.5)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일본영토론 조작방식」, 『일본근대학연구』 제44집, pp. 293-412
- 최장근(2003)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과의 관련성」,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pp. 315-358.
- 井上清(1974) 『尖閣列島一釣魚諸島の史的解明』現代評論社, pp.24-33.
-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 奥原碧雲(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 (1907) 「竹島沿革考」, 『歴史地理』第8卷 第6号 .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 (1953) 『竹島の領有』日本外務省条約局.

- 島根県編(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島の研究』, pp.1-83.
-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 pp. 132-171.
- 竹島問題研究会(2007.3) 『最終報告書: 竹島に関する調査研究』 竹島問題研究会, pp. 90-181.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検証独島・竹島』 岩波書店, pp.46-61.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 新幹社, pp.53-71.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참조.
- 島根県(2015) 「竹島問題研究会」,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5년 5월20일)
- 下条正男(2015) 「竹島問題と韓国の‘歴史認識問題’」 『平成26年度「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の開催について』(第4回, 1月24日),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takeshima07/H26kouza.html>(검색일: 2015년 5월20일)
-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要 旨

The Takeshima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came after World War II. Japan admitted to South Korea the effective jurisdiction of Dokdo i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1965. The issue of Takeshima was quiet up until today. The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was signed in 1998. It was not a convention on territory but an agreement on fisheries. However, Shimozyo Masao insisted that it was on Dokdo territorial agreement. He argu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very bad. This study analyzes Shimozyo Masao's perception on the Takeshima problem and his perception of history. The study of Shimozyo Masao did not get recognized for academic studies. So he proposed a workshop on Takeshima issues. He moved the governor of Shimane Prefecture. He also moved some congress members of the Shimane Prefecture. He suggested the ordinance of the 'Day of the Takeshima.' He persuaded the lawmakers of Shimane Prefecture. He also persuaded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through the Congress. He finally moved the Prime Minister Shinzo Abe. His logic on the Takeshima issue is not originally his. His logic is the studies of Okuhara Hekiun, Kawakami Kenzo, and Tamura Seizaburou. Shimozyo Masao premised that Takeshima is the territory of Japan. He denied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He deliberately incorrectly interpreted historical data. He completely denied the logic of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Therefore, his logic is not logical. It is not objective. It is unfair. It is not academic.

キーワード : 죽도문제(Takeshima Problems), 독도이슈(Dokdo Issues)
시모조 마사오(Shimozyo Masao), 한일관계(History of Japan -
Korea relations), 한국영토(Korean Territory)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